

등록번호	어르신복지과-3714
등록일자	2015. 11. 17.
결재일자	2015. 11. 17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어르신시설팀장	어르신복지과장	복지문화국장
이윤	최장순	이정근	11/17 오제성
협 조	주무관 이현돈		

-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및 -
겨울철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



서 대 문 구
어르신복지과

-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및 - 겨울철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

겨울철 한파 및 폭설 등에 대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점검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관련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(시설의 안전점검 등)
- '15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 기본계획(국민안전처, '15.08.20.)

II 점검개요

- 점검기간 : 2015. 11. 23. ~ 12. 7.
- 점검대상 : 18개소 【붙임1】 점검대상
 - 노인여가복지시설 : 15개소
 - 노인의 집 : 3개소
- 점검자 : 3명(사업별 담당자 외 1명)
- 점검방법 :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및 현장방문 점검
- 점검사항
 - 한파 및 폭설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 : 동파 및 제설장비 구비 등
 - 화재발생 대비, 화재예방책 : 화재보험 가입, 소화설비 구입 등
 - 전기, 가스 안전관리 실태 : 가스관로, 전기공급 등 안전점검

Ⅲ 세부 추진계획

【겨울철 대비 시설 안전점검】

■ 방 법 : 시설 자체점검 및 현장방문 점검

○ 시설 자체 점검(1차) : 점검표에 의거 점검

➤ 점 검 자 :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

➤ 기 간 : 2015. 11. 19. ~ 2015. 11. 27.

➤ 점검결과 제출 : 2015. 11. 30.까지

○ 구 담당자 점검(2차) : 시설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미비사항 보완조치

➤ 점 검 자 : 3명(사업별 담당자 외 1명)

➤ 기 간 : 2015. 12. 1. ~ 2015. 12. 7.

■ 분야별 점검사항

분	야	내	용
소	방	- 소방, 방화 피난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관리상태 - 전기, 가스, 주방시설의 화기 취급 등 안전관리상태 - 자체 소방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등	
전	기	-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작동여부 - 각종 전기시설물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- 전선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등	
가	스	- 가스용기 적정 관리여부 및 주변 가연성 물질 방치여부 - 가스차단기, 경보 등 정상 작동 여부 - 지하실 적정 환기 및 관리여부 - 가스밸브 작동 및 노후여부, 배관매설, 고정상태 적정여부	
건	축	-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사항 적법 여부 -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에 관한 사항 - 내부마감재료 사용 적정 여부 등	
한	과 및 폭설	- 제설장비 및 물자확보 여부 - 각종 구조물, 기둥, 옹벽 등 적설에 의한 하중과대 대비 - 난방기구 정상작동 및 배수관 동파 대비 대책 - 폭설시 제설작업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여부 - 시설내 빙판길 제거 여부 등	

■ 점검결과 조치

-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
- 긴급을 요하는 지적사항은 시설 자체 예산으로 정비
- 장기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정비
-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육안 상 심각한 균열 발생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

【특정관리대상 및 제외 시설물 일제조사】

■ 점검기간 : 2015. 11. 23. ~ 11. 30.

■ 점검대상 : 노인복지관 5개소

- 특정관리대상시설물 :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
- 특정관리대상제외시설물 :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, 창천노인복지센터, 북가좌2동노인복지센터, 인왕어르신복지센터

■ 점검사항

-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등급 등 변동사항 파악
- 특정관리대상제외시설에 대한 신규 대상 여부 조사 등

유의사항

- ▶ 조사대상 : 중소형건축물(노유자시설)로 연면적 1,000㎡이상 ~ 5,000㎡ 미만이며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
- ▶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 포함 동별로 계산

■ 일제조사 결과조치

- 안전등급평가 결과 D·E등급으로 산정된 경우
 - 공공시설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즉시 실시
 -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 후 후속조치 철저
-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 제한·금지 등 응급조치

-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(A·B·C등급 : 2명, D·E등급 : 3명)

구분	중점관리시설	재난위험시설
정	· 어르신복지과장	· 복지문화국장
부	· 시설담당자	· 어르신복지과장 · 시설담당자

- 국가재난관리시스템(NDMS) 조사결과 입력
 - 「2015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지정·관리 지침」에 의거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“관리대상제외시설물”로 표시하여 정리
- D·E등급에 대해서는 장·단기 해소대책 수립·이행

IV 향후 추진 일정

- 안전점검 일정 통보(2015. 11. 18.)
- 시설별 자체점검 결과 제출(2015. 11. 30.까지)
- 현장점검 결과 지적·처분 사항 향후 재점검, 시정여부 확인
-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수범사례 등 적극 발굴·관리

- 붙임 1. 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 1부.
 2. 점검표(서식) 1부.
 3. 2015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 1부. 끝.